

	<h1>교무위원회 규정</h1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1984. 3. 1.
		최종개정일자	2022. 04 01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4.7.2><개정 2014.9.30>

**제2조(구성)** 교무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기획산학처장, 교무입학처장, 교육혁신처장, 행정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.<개정 2014.7.2><개정 2014.9.30><개정 2022.4.01>

**제3조(위원장 및 직무)**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리한다.<개정 2014.7.2><개정 2014.9.30>

**제4조(회의소집)** 교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<개정 2014.7.2><개정 2014.9.30>

**제5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)**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4.7.2><개정 2014.9.30>

**제6조(심의사항)**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
2. 학칙 및 기타 제 규정의 제정,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학과설치 개폐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
4. 교수회의 안건 중 필요한 사항
5.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<개정 2014.7.2><개정 2014.9.30>

**제7조(회의록)** 교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한다.<개정 2014.7.2><개정 2014.9.30>

**제8조(업무관리 및 간사)** 교무위원회의 업무는 교무입학처에서 관장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학과장을 간사로 한다.<개정 2014.7.2><개정 2014.9.30>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